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월

매출채권 · 미수금 · 미수수익의 구분

계정과목	내용	사례
외상매출금, 받을어음	일반적 영업매출의 미회수액	상품 · 제품매출, 용역수입 등
미수금	일반적 영업매출 이외의 미수채권	중고차량매각 등
미수수익	일반적 영업매출 이외의 수익거래로서 대금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채권	수입임대료 수입이자 등

화

세금포인트 제도는

정의	- 개인 또는 법인(중소기업)이 낸 세금에 따라 포인트 부여
지원 내용	- 쇼핑몰 · 박물관 · 수목원 할인, 납부기한 등 연장 담보 면제 등
부여 대상 세목	- 종합 ·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 · 퇴직 · 사업 · 기타 소득세 등
부여 기준	-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포인트 - 고지납부세액 10만원당 0.3포인트(개인)



홈택스 개편 내용

구분	최상단 메뉴					
종전 (6종)	조회/발급	민원증명	신청/제출	신고/납부	상담/제보	세무대리/ 납세관리
개편 (8종)	세금신고	납부·고 지·환급	국세증명· 사업자 등록· 세금관련 신청/신고	지급명세 서·자료제 출· 공익법인	-	-
	장려금· 연말정산· 전자기부금	전자(세금) 계산서· 현금영수 증· 신용카드	상담·불 복·고충· 제보·기타	세무대리· 납세관리		



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

임대주택유형	전용면적	주택 수	공시가격	임대기간	임대료
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³⁾	-	전국 1호 이상	6억원 이하 (비수도권 3억 원 이하)	8년 이상 ¹⁾ 10년 이상 ²⁾	증가율 5% 이하 ⁴⁾
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	149m ² 이하	전국 2호 이상	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⁵⁾	8년 이상 ¹⁾ 10년 이상 ²⁾	증가율 5% 이하 ⁴⁾

- 1) 2018. 4. 1.~2020.8.17. 사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
- 2) 2020.8.18.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(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)과 세무서에 사업
자등록을 한 경우부터 적용
- 3)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.9.14.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
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
- 4) 2019.2.12. 이후 최초 체결(갱신)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
결하는 분부터 적용
- 5) 2021.2.17.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부터 적용